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 접촉 등 상황의 보고 기준과 기한을 변경하고 추적·관리가 필요한 대상과 그 기간을 질환별 관리 기준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대원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 신설과 119감염관리실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통해 감염 및 건강관리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 관련 조항 정비(안 제26조제1항 및 제5항)

- 1) 119감염관리실의 기능이 소독만으로 한정되어 기능적 확대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상위기관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설치” 문구를 삭제하여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설치를 유지하되 필요시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이 설치·운영 가능한 단서 신설을 통해 상위기관의 중앙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나. 감염성 질병 접촉 등 보고 기준·기한·관리 정비(안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3제5항)

- 1) 보고 기준이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 접촉”으로 한정되어 환경·매개체 등에 의한 직접 노출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고, “48시간” 내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 지연의 정당화를 위한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질환별 특성·상황 등과 무관하게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대원을 일괄 “진료 및 15일간 추적”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2) 보고 기준을 “감염성 질병과 접촉 등으로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경하여 환자·환경·매개체 등에 의한 경우와 근무지 집단감염 등까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 지연을 방지하며,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원”에게 “질환별 관리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함
-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추가(안 제32조의4 제3호 및 제4호)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와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대원의 감염·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을 “노출되는 경우 또는 감염성 질병과 접촉 등으로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우려되는”으로, “48시간 이내에”를 “신속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질병과 접촉 등으로 질병의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조·구급대원이 치료 등의 적절한 관리”로,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를 “조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을 “질환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으로 한다.

-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과 구조·구급대원등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19감염관리실의 운영 형태,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이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으로 한다.

제27조의3제5항 전단 중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접촉하는 등 질병의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조·구급대원이 치료 등의 적절한 관리”로,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해야”를 “조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잠복기가 긴 감염병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을 “질환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으로 한다.

제32조의4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6조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
4. 영 제27조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감염방지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감염방지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과 구조·구급대원등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19감염관리실의 운영형태,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이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 노출되는 경우 또는 감염성 질병과 접촉 등으로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 ---- 신속히 -----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유해물질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	③ ----- ----- ----- 질병과 접촉 등으로 질병의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조·구급대원이 치료 등의 적절한 관리----- 조치-----

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7조(건강관리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구급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27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① ~ ④ (생략)

⑤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3 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감염병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

-----.
----- 질환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건강관리대책) ①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접촉하는 등 질병의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조·구급대원이 치료 등의 적절한 관리--- 조치하여야 ----
-----.
--- 질환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

· <u>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 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영 제26조에 따른 구조·구 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 무 4. 영 제27조에 따른 구조·구 급대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 무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119구급과	
연 락 처	(044) 205 - 7723